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8호의2서식] <개정 2016. 7. 21.>

[ ]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[ ] 휴업
[ ] 폐기물분석전문기관 [ ] 폐업 신고서
[ ] 재개업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
신고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
[ ]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번호				
[ ] 폐기물 분석전문 분야	일반(□)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□), 석면(□)		지정번호	
[ ] 휴업 [ ] 폐업 연월일 [ ] 재개업	. . .	재개업 예정 연월일 (휴업인 경우)	. . .	
[ ] 휴업 [ ] 폐업 사유 [ ] 재개업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

[ ]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
[ ]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

[ ] 휴업
[ ] 폐업 을 신고합니다.
[ ] 재개업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휴업·폐업의 경우: 지정서 원본 2. 재개업의 경우 가. 시험·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실태조사	→	결재	→	신고수리
신고인						국립환경과학원장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